

●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1443호

「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(국토교통부 고시)」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16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」 제정(안) 행정예고

1. 제정이유

- 「공항시설법」 제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별표 17 제3호가목에 따라 전국 항행안전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장애 예방 등을 위해 운영 중인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처리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제정(20년) 운영 중이나,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고시를 폐지하고,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에 연계되어 관리 및 운영되는 대상 범위 중 누락된 항공교통관제소를 추가하고자 함(안 제2조)
- 나. 전국 항행안전시설 운영상태 분석 등 소요기간을 고려해 운영계획 보고

일정 조정(1월20일 → 2월10일) 및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(안 제8조)
다.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따라 법령의 위
임에 따라 발령된 행정규칙(고시)의 재검토기한을 3년의 범위에서 설정
하고자 함(안 제14조)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6일까
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
니다.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>정책자료>법령
정보>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견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
항행위성정책과((우)30103)
- 전자우편 : hjs4869@korea.kr
- 팩스 : 044-201-5637(국토교통부 항행위성정책과)

4. 그 밖의 사항

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행위성정책과(전화 (044) 201 -
4358, 팩스 044-201-563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